

언론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심의실

I. 머리말

언론침해구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996. 6. 13.자로 개정되었고,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사건 및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이 1996.6. 27.자로 공포되었으며, 언론중재의 실무절차를 규정한 「언론중재규칙」(이하 「규칙」)이 1996. 7. 1.자로 개정되는 등 하위 법규들이 새롭게 정비되어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분쟁해결의 절차적 기준들이 새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언론중재의 세부 절차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사입장에서는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정법시행 이후의 중재실무경험에 의하면 양 당사자들이 달라진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합의 또는 화해를 전제로 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개정된 현행법 하에서 중재신청과 접수, 심리, 중재결정 등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신청인인 언론피해자의 권리실현에 도움을 주고,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갖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의문을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중재과정에 양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중재실무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실무절차의 안정화와 중재제도발전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중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해 법 및 시행령, 규칙, 실무관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항은 명기하지 않고 기술하되,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논문에서 소개된 바 있는 현행법의의의나 법리, 개정전 법률과의 비교검토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II. 언론중재제도, 무엇을 구하는 절차인가?

1. 중재대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법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에 갈음하는 처분,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함께 특별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제도는 서유럽에서 일반화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다만, 서유럽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바로 병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충격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반드시 여기를 거쳐 법원에 제소토록 하였고,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원래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 764 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언론기본법이나 동법의 대체 법률인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등 언론법에 규정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이는 이미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권리의 명칭을 바로잡아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고, 반론보도청구권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만 하는 반론보도청구와는 달리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임의적·부가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될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에 국한된다(반론보도청구권의 한 형태인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개념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2.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개념비교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매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작성주체는 피해자 본인이며, 언론사는 반론문 게재지면만을 제공할 뿐이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언론보도가 전적으로 진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보충적 반론권). 그러므로 피해자는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어떠한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한 입증은 언론사가 해야 한다.

이에 비해 민법상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언론사 스스로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정보도문의 작성주체는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 자신이며, 반론보도에 비해 강도가 더 높은 피해회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자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허위여서 위법하며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Ⅲ. 중재신청 요건-누가, 어느 기간내에 무엇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당사자 적격

특정 보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라든가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중재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요건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적 예시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피해를 받은」이란 표현은 신청인의 인격적·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가 보다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피해자간의 「개별적연관성」, 즉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칭되거나 또는 보도에 언급된 대상이 누구인지 추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특히 「자」란 표현과 관련해 민법상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국가·회사·학교·재단법인 등의 법인,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종종·학회·동창회·친목회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이 모두 반론보도청구권자로 인정되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중재신청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 16 조 제 2 항 및 제 7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과 정정과 반론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정정보도청구 역시

중재의 대상으로 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재 절차에서는 실무상 정정보도청구권자에 대해 반론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청기간

민형사상의 불법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듯이 언론중재신청 역시 권리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청인이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언론사에 서면으로 직접 권리청구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중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중재신청일이 1개월 이내라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하면 될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필요치 않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했다고 다투는 것은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해야 하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언론사에 있다.

다음으로, 언론사에 직접 권리청구를 하였으나 협의불성립되어 중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이다. 신청인이 언론사에 직접 권리청구를 할 때에는 위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신청기간과 마찬가지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다시 중재신청을 하게 될 때에는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중재신청일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협의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진다.

3. 중재대상기사-사실적 주장

신청인은 어떤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가? 법은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그 신청을 허용한다.

특정 보도가 중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인가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 중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신문에 있어서 논설과 칼럼 등 고정적인 난등은 그 자체로 보아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공연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기사도 대부분이 가치평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의견 또는 논평기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중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IV. 중재신청서 작성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에 관해서는 시행령보칙 제 36조에 의해 공보처장관이 고시한 별지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이 양식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각 지역중재부 사무실을 방문해 교부받거나 Fax로 받아볼 수 있다.

1.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크게 보아 청구명, 신청인 인적사항, 중재대상, 중재신청사항, 서명날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청구명

청구명란에는 신청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명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중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명을 기입하면 된다.

(2) 신청인

신청인 인적사항란의 기재요령은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와 기관·단체 법인 등일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개인이라면 신청서상의 ② 성명, ③ 주소, ⑤ 주민등록번호, ⑦ 전화번호란에 각각 기재를 한다. 신청인이 기관·단체 법인일 때는 ② 성명(단체명), ④ 대표자성명, ⑥ 소재지, ⑦ 전화번호란에 각각 기재한다. 신청서 작성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보도를 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실무상 그 사업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란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함께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신청인이 다수여서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에 신청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날인을 하면 된다.

(3) 중재대상

여기 에는 ⑧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국명, ⑨ 보도지면 또는 일시, ⑩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기재한다.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기재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권리의 행사기간을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채용하고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⑪ 보도내용은 별지로 첨부하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보도전문용, 방송의 경우에는 녹화테이프와 보도내용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4) 중재신청사항

중재신청사항은 대부분의 경우 언론중재신청서 양식에 모두 기재하기 곤란하므로 별지에 기재한다. 통상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신청사항에 포함될 내용으로 중재신청이유와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을 작성해오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해 설명하기로 한다.

(5) 서명·날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서 양식 말미에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중재실무경험에 의하면, 근래에는 모든 문서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관계로 서명·날인대신 기명·날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중재신청사항

(1) 중재신청이유

중재신청이유는 신청인이 신청에 이르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된다. 즉, 보도내용중 신청인과 관련해 어떠한 부분이 무슨 이유로 잘못되었는지(또는 사실과 다른지)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문안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로서(인데), ○○신문 1996년 8월 1일자 32면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또는 허위보도 되어) 중재신청한다. ○○신문은 위 기사에서 신청인과 관련해 「~」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당시 ~이유로 ~했으므로 사실은 「~」하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재신청한다」

(2)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가. 크기

신청인이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는가? 우선, 법은 반론보도문의 크기에 관해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해 학설상 원문보도의 기사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의 분량만이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설과 사실보도부분과 의견보도부분을 포함하여 이의 대상기사 전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론보도문에는 원보도와 의 연관성을 표시해야 하고 원보도의 내용을 요약해 반복해야 하며, 「~이 아니다」라는 단순부정에 더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보충 또는 설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자수를 기준으로 한 앞의 두 가지 학설은 권리의 실질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 개정당시 「자수」에 의한 기준을 원문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범위」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판례와 학설의 경향으로 미뤄볼 때, 반론보도문의 크기가 신청인의 응축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추후보도문의 크기는 반론보도문의 크기에 준하여 허용되지만, 권리의 성질상 반론보도문에 비해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이 역시특정사실을 바로잡는 '범위'내에서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게재 지면 및 부위

신청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상 동일한 지면, 동일한 부위에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동일한 지면과 부위란 원보도가 실렸던 부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최근 일간신문의 발행연수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숫자로 표시한 면의 표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게재를 원하는 지면을 지정할 때에는 제 1 사회면, 경제면 등과 같이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제목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의 제목에 관해 법문상 명시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신청인이 단순히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이라고 제목을 명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되며, 원문보도의 제목에 상응하는 내용의 제목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 「~보도에 대한정정(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도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원보도에 부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응한 부제도 허용된다.

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의 내용

신청인이 청구할 수 있는 요구문안에는 반론보도문, 정정보도문, 추후보도문 등 세가지 유형이 있다.

ㄱ. 반론보도문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우선 원문보도와 의 관련성을 표시해야 한다. 신문 등 기타 인쇄물일 경우에는 매체명, 발행일자, 면수, 제목 등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방송일 경우에는 방송국명, 보도일시, 프로그램명 등을 표시한다. 다음으로 보도내용 중 문제된 부분을 요약하는데, 이 때 원문보도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혼란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원문보도가 인용된 형태라면 인용된 형태로 요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원문보도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언론의 사실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상의 진술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실상의 진술에 국한된다.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권자 자신」이지 「언론사」가 아니므로 반론보도문의 말미에는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0000」 또는 「반론보도신청인 김 OO」과 같이 반론보도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반론보도문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될 내용이 있다.

첫째, 반론보도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위법한 내용이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같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보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보도를 하도록 언론사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반론보도에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원보도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외에 원보도의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신청인 자신을 PR 하는 내용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셋째,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은 반론보도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반론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뿐 아니라 언론사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ㄴ.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보도내용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시정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의 작성주체는 언론사 자신이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의 말미에는 반론보도문에서처럼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원문 보도의 발행일자, 면수, 제목 등의 표시와 보도내용 요약은 반론보도문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을 실는 대신 언론사의 정정문안이 게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ㄷ. 추후보도문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추후보도문의 경우 그 내용은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중재대상기사의 혐의사실보도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신청인에 대한 그 혐의사실이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여러 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보도되고, 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 경우 신청인은 죄가 없음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추후보도문의 말미에는 반론보도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기타 증빙 자료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중재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 3 조).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죄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예컨대 확정판결문, 불기소증명원,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을 법원이나 검찰·경찰로부터 발부 받아 첨부해야 한다.

보도내용상의 사실에 대한 입증은 법원에서와 같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상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

V. 중재신청

1. 신청형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어떤 권리를 어떠한 형태로 신청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중재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추후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한 형태이다), 법원제소단계에서는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심리절차가 달라진다.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증거조사 등을 통한 입증의 부담이 있다. 반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의 진위가 전제되지 아니하므로 입증에 대한 부담이 적다. 권리의 성질이상이하다는 점 때문에

법원절차상 정정보도청구는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따라 본안절차로 심리가 이뤄지며, 반론보도청구는 신속·간편한 가처분절차에 따른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재 신청시 선택을 강요한다. 즉, 피해구제의 강도면에서 정정보도가 반론보도보다 효과가 더 크겠지만 법원소송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많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정정보도청구보다는 심판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는(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제 4 조 제 1 항 ;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반론보도청구가 실익이 있을 수 있다.

신청형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한 매체의 한 보도에 대해 한 통의 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한 매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면 각 기사에 대해 각각 신청서를 작성·신청할 수도 있고, 한 통의 신청서에 여러 건의 보도문이 게재되길 원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매체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음을 이유로 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통의 신청서를 작성·신청하는 주관적 병합 형태의 신청은 병원소송절차에서는 인정되나 중재실무에서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 보도에 대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신청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대로 두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원칙상 권리에 따라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통의 신청서에 정정을 주위적 청구로, 반론을 예비적 청구로 기재하거나 단순히 「정정 및 반론청구」로 기재하여 신청했다 하더라도 중재절차에서는 이 또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자체가 소송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고려,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각각 첨부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기일이전 또는 기일에서의 청구취지변경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은 신청당시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기일 중에 이를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한다면 법원제소단계에서 신청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비용은 무료이다.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며, 중재부의 명칭·관할구역 및 주소는 도표와 같다. 서울에서와 같이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여러개의 중재부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 중재부를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며,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VI. 처리결과

1. 접수

중재신청서를 접수받은 사무처나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통상 제출받은 중재신청서 양식에 접수인을 찍고 그 사본을 접수증으로 교부한다. 중재신청을 접수한 사무총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언론중재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고,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을 관할할 중재부를 지정하게 된다.

2. 예비회의

중재신청사건의 관할 중재부는 중재기일지정에 앞서 신청이 적법한지 또는 신청내용이 법 제 16 조 제 3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실무상 현직 부장판사인 중재부장이 하게 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른 위원들과 의논해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나, 신청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중재부 위원들이 회합하는 예비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예비회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회의결과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지정할 필요도 없이 중재신청을 결정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사실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넘겨 중재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각하하며, 신청인이 게재를 요청한 반론문의 내용이 권리행사적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권리행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바, 이 글의 목적상 상론은 피하기로 한다.

중재부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은 기일지정전 예비회의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재기일에 행할 수도 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문의 송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관행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중재부의 명칭·관할구역 및 주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1996. 9. 현재

명 칭	관 할 구 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제1중재부 서울특별시 제2중재부 서울특별시 제3중재부 서울특별시 제4중재부 서울특별시 제5중재부	서울특별시 일원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505	732-6031~3 725-0050
부산광역시 중재부	부산광역시 일원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백산빌딩 8층	(051)759-7083~4
대구광역시 중재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1-9 3.1빌딩 301호	(053)755-0108~9
경주광역시 중재부	경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경주시 동구 지산동 720-31 금오빌딩 4층	(062)222-7031,7033
대전광역시 중재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대전시 중구 선화3동 151-13 선화현대빌딩 203호	(042)257-0039
경기도 중재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 송림빌딩 7층 703호	(031)211-9027
강원도 중재부	강원도 일원	춘천시 효자2동 709번지 대양빌딩 6층	(0361)55-2878
충청북도 중재부	충청북도 일원	청주시 석교동 37-5 성화빌딩 302호	(0431)52-1250
전라북도 중재부	전라북도 일원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 비사빌딩 8층	(0652)88-0010
경상남도 중재부	경상남도 일원	창원시 용호동 73-39가 동산빌딩 301호	(0551)63-1787
제주도 중재부	제주도 일원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국빌딩 4층	(064)22-3328

3. 중재기일지정

중재기일이란 중재위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중재서기 등 중재관계자들이 중재위원회 서울사무처 회의실 또는 해당지역 중재부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중재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중재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중재부는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최초 중재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중재부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지에 빠른등기우편(빠른등기우편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송달한다. 이때 개인이 아닌 신청인에게는 중재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분과 중재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함께 발송한다. 당사자가 사무처를 방문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고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할 수도 있다.

중재기일의 지정은 통상 양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중재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며, 기일의 변경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이다. 즉, 당사자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부는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하여 다시 중재일을 지정하게 된다.

재판절차상 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허용되고, 기일의 지정역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지정되는데 반해 중재절차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단기간에 심리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기일의 횟수는 중재처리기간 내에 (신청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재결정의 경우 21일이내이긴 하나 심리를 위한 기일은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여러차례 지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한 사건에 대해 1회 또는 2회 정도밖에 개최할 수 없다.

중재사건의 중재기일에 출석한 자에 한해서는 중재부가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4, 중재기일의 절차

(1) 출석

출석을 요구받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기일에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신청인이 최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보도문과 함께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피신청인이 1차에 이어 2차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면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피신청인은 유의해야 한다.

(2) 중재대리인

중재기일에 신청인은 그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변호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재부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중재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는데, 실무상 중재부는 출석요구서 송달시 중재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경우, 실무관행상 중재부가 허용하고 있는 대리인의 자격은 「편집권을 갖고 있는 데스크급」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일진행

중재기일(중재회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일에는 관할 중재부의 중재위원, 당사자 또는 중재대리인, 중재서기 등이 참석하며,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 중재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 된다.

실무관행상 기일 개시전에 출석한 당사자는 상호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재신청사건에 관해 임의로 상호협의할 수도 있다. 중재부가 기일개시직전에 당사자간 임의적인 협의를 위해 기일개시를 늦추면서 시간을 주는 이유는 출석요구서를 받아본 이후 중재기일까지 양 당사자가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양 당사자가 합의 또는 화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중재실무상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을 주었는데도 당사자간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중재부는 곧바로 기일을 개시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기일에서의 절차는 통상 중재부장이 주재한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중재부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을 해야하며, 중재부장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발언이 금지될 수 있다.

기일에서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답변서와 준비 서면으로 진술할 경우에는 상대방의수에 상응한 부분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기일진행은 사건과 당사자 호명으로 개시되어, 신청인측의 중재신청서에 의한 진술, 이에 대응한 피신청인측의 중재답변서 또는 구술에 의한 진술, 중재위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부의 조정 내지 조정안 제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 및 의견의 제시, 중재부의 기일종료선언 또는 2차 기일지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재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는 실무상 기일에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에 관한 당사자로부터의 진술청취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밖에도 증인신문, 서증조사, 검증, 감정, 관계기관 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재처리시한이 단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심도 있는 증거조사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절차의 목표는 기일에서의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다. 그러나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중재부는 분쟁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여 당사자가 수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를 다투도록 중재불성립결정을 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종료한다.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당사자의 중재신청취하, 신청인의 기일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 피신청인의 2회 기일불출석으로 인한 합의간주, 중재부의 기각·각하결정 등에 의해서도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이 중 중재부의 기각·각하결정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 기일에서의 「합의」

「합의」란 양 당사자가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간 협의 또는 중재부의 조정노력에 의해 확정된 형태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하고 중재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해당중재부의 확인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중재합의서에는 합의된 문안과 게재될 매체명, 게재일시 및 지면, 제목크기, 활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해당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보를 합의가 이뤄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합의간주

피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합의간주 제도는 피신청인이 출석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

피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면서도 1차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및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보도문안은 피신청인이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합의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해법이 요구하는 범위 및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시 제출한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안 중 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법에 맞게 정리수정하게 된다. 그렇게 다시 정리된 문안을 받아보고도 피신청인이 2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문안 및 게재방법 등은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합의간주의 효과가 부인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그 사유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합의 간주된 경우,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보를 합의성립통지서와 함께 합의간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중재결정

현행 중재제도는 조정을 통한 합의도출을 제 1차적 목표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능으로서 직권중재결정의 권한을 중재부에 부여하고 있다. 즉, 중재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다.

중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은 중재결정의 경우 중재사건처리를 통상의 14일에서 1 주일을 연장한 21 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중재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중재부는 중재결정문 정보를 중재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가 중재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중재결정은 확정되며,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이의신청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은 무조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정식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중재결정을 그 자체로서 강제하게 된다면 헌법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은 직권중재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5) 중재불성립결정

중재기일에 조정의 결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분쟁해결의 기능상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모든 경우에 중재결정을 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14 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재부로서는, 사안이 복잡하고 쌍방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어서 좀 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고 법원이 판단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까지 무리하여 중재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게된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특정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중재부의 자유재량 사항이다. 그러나 실무상 양 당사자의 감정상 골이 너무 깊어 중재부가직권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도 중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부가 중재불성립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문 정보를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6) 취하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중재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절차종료라는 측면에서의 취하는 중재화해성립 이전이나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중재신청을 취하였다면 중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심판을 신청할 경우 각하될 것이다.

(7) 취하간주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취하 간주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때에는 취하간주가 부인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취하간주된 때에는 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심판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기타

(1) 조서 및 결정문에 의한 집행

앞에서 설명한 중재절차의 종료 중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합의, 합의간주, 중재결정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합의한 내용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 경우 신청인은 중재화해조서, 합의간주된 사항의 중재조서, 확정된 중재결정문 등을 채무명의로 하여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에서의 판결이나 결정은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지만 중재화해조서, 합의간주된 사항의 중재조서, 확정된 중재결정문등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법원에 별도의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문 부여신청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기타 집행제에 제출하는데, 이때 위조서 또는 결정문 정본을 함께 제출한다.

집행문이 부여되면 신청인은 해당 중재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한다.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피신청인)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지급하게 하거나 일시에 일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명한다. 이 경우 그 액수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원실무상 통상 1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배상토록 명한다.(2) 법원에의 청구중재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지거나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의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인용을 조건으로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VII. 맺는말

이상에서 중재신청에서부터 접수, 기일지정, 심리, 중재결정 등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언론중재의 전과정을 관련규정 및 실무관행에 기초해 살펴보았다. 언론중재제도가 우리 법제에 채용된 이래 법률의 제정과 재청과정을 거치면서 중재절차는 변화 '와 개선을 거듭해왔다. 언론중재의 1차적 목표는 화해를 알선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중재절차는 이러한 목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듬어지고 기능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